

#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

## 1. 신구 대조표

구 규정	신 규정(개정안)	비고
제1조 【명칭】 이 규정은 '전라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'이라 한다.	제1조 【명칭】 이 규정은 '전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'이라 한다.	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'학생생활규정'으로 수정
제2조 【목적】 이 규정은 「교육기본법」 제12조 제1항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8조의 제1항, 제17조, 제18조의 4, 제20조 제4항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9조, 제31조, 「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」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2조 【목적】 이 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조와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및 「전라고등학교 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3조 【학생의 인권보장 원칙】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②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. ③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. ④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.	(삭제)	。「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」 제3조제2항, 제3항 및 제5조제2항제1호에 의거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우호적 문화 조성을 위해 를 위해 삭제.
제4조 【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】  ① 학교의 장, 교직원,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.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. ③ 학교의 장은 「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」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,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.	제3조 【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】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·보호·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, 학교 및 교원의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(이하 "교육활동"이라 한다)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	

	<p>③ 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,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.</p>	
<b>제2장 학생의 권리</b> <b>제4조 【학습에 관한 권리】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자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.</li> <li>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,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·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.</li> <li>③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, 예·체능 학생,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,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.</li> </ul> <b>제6조 【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】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.</li> <li>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,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</li> <li>③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.</li> </ul> <b>제7조 【차별받지 않을 권리】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.</li> <li>② 학교의 장은 빈곤, 장애, 한부모 가정, 조손가정, 다문화가정, 북한 이탈 학생, 운동선수, 성 소수자,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.</li> </ul>	<p><b>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</b></p> <p>모든 학생은 「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」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습에 관한 권리</li> <li>2.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</li> <li>3.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</li> <li>4.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</li> <li>5.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</li> <li>6. 안전에 대한 권리</li> <li>7. 휴식을 취할 권리</li> <li>8. 개성을 실현할 권리</li> <li>9. 사생활의 자유</li> <li>10.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</li> <li>11. 정보에 관한 권리</li> <li>12. 양심·종교의 자유</li> <li>13. 표현의 자유</li> <li>14. 자치활동의 권리</li> <li>15.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</li> <li>16.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</li> <li>17. 복지에 관한 권리</li> <li>18.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</li> <li>19.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</li> <li>20. 급식에 대한 권리</li> <li>21. 건강에 관한 권리</li> <li>22.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</li> </ol>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제2장 학생의 권리를 제2장 권리와 책임으로 수정</li> <li>◦ 제3조(학생의 권리) 신설하여 현 예시안 제4조부터 제21조까지의 권리를 제3조 각호에 명시함.</li> <li>◦ 「전북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」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존중하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함.</li> </ul>

<p>③ 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.</p>	<p><b>23.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24. 그 밖에 보편타당한 권리</b></p>	
<p><b>제8조 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】</b></p> <p>① 학생은 따돌림, 집단 괴롭힘,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·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,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	
<p><b>제9조 【안전에 관한 권리】</b></p> <p>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,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, 지역주민과 협력한다.</p>		
<p><b>제10조 【휴식을 취할 권리】</b></p> <p>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.</p>		
<p><b>제11조 【개성을 실현할 권리】</b></p> <p>① 학생은 복장, 두발의 길이·모양·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.</p> <p>② 교복(춘추복·하복·동복 등)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, 색상·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.</p>		

### **제12조 【사생활의 자유】**

- ①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.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,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.
-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할 수 있다.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,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.
- ③ 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.

### **제13조 【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】**

- ① 학생은 가족, 친구관계, 성적,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.
-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-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.

### **제14조 【정보에 관한 권리】**

-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② 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·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 할 권리가 있다.
-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### **제15조 【양심·종교의 자유】**

-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,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.
-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.

### **제16조 【표현의 자유】**

- ①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.
-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.
-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.
-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.
- ⑤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,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, 필요한 시설과 행·재정을 지원한다.

### **제17조 【자치활동의 권리】**

- ① 학교는 학생회,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.
- ②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%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,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.
- ③ 학교는 성적,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,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.
- ④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,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.
- ⑤ 동아리는 학술제, 예술제,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.

### **제18조 【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】**

-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
<p>②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·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,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.</p> <p><b>제19조 【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】</b></p> <p>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</p> <p>②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<b>제20조 【건강에 관한 권리】</b></p> <p>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,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,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(냉난방, 미세먼지 제거 등)을 확보하고 유지한다.</p> <p><b>제21조 【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】</b></p> <p>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.</p> <p>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,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</p>		
<p><b>제5조【학생의 책임】(신설)</b></p>	<p><b>제5조【학생의 책임】</b></p> <p>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교구성원의 인권 존중 책임</li> <li>2.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 할 책임</li> <li>3.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</li> <li>4.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 할 책임</li> <li>5. 학교규칙과 규정 준수의 책임</li> <li>6. 학생 서로 존중하여 학교 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</li> <li>7.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 준수의 책임</li> <li>8.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</li> </ol>	<p>학생이 학교 뿐만 아니라 세계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알고 의무를 져야 하는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, 「교육기본법」 제12조제3항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의4제2항, 「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」 제4조 제3항 등에 명시되어</p>

	<p>9.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를 책임</p> <p>10.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할 책임</p> <p>11. 그 밖에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</p>	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각 호 작성.
제3장 학생 생활	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	명칭 수정
<b>제22조 【기본행동】</b> ①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. ② 욕설,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.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 ④ 다른 사람을 비하·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,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. ⑤ 성(性)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. ⑥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. ⑦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,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.	<b>제6조 【기본행동】</b>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. ② 학생은 욕설,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.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·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, 상징,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,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물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. ⑤ 학생은 성(性)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. ⑥ (삭제)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 ⑦ (삭제)	◦ 학생생활규정은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치 규칙인 만큼 현행 '제3장 학생생활'을 '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'로 변경하고 이하 각 조항의 세부 내용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학생과 교직원간의 상호 인권존중의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항과 항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함. ◦ 「세계 인권 선언」 제29조 제1항에서 3항부터 「교육기본법」 제12조 제3항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의4제2항, 「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」 제4조 제3항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.
제23조 【수업태도】	<b>제7조 【수업태도】</b>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교사가 제35조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반복하였음에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. (신설)	◦ 타인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침해 방지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의무,

<p>경우,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정계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생의 지도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.(별첨1)</p>	<p>⑨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실시간 송출, 녹화,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. (신설)      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하여 교사가 훈계,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를 반복하였음에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을 경우,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정계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생의 지도는 생활교육(정계) 기준에 의하고 그 밖의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</p>	<p>책무 추가.          。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3조(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), 제14조(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)에 의거 신설.</p>
<p><b>제24조 【휴식시간과 여가활동】</b></p> <p>① 학교의 장,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(식사시간 포함)을 보장한다.          ② 휴식시간(식사시간 포함)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.          ③ 여가시간에 전산실, 음악실, 체육관,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이용 규칙을 지킨다.        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.</p> <p>5항(신설)</p>	<p><b>제8조 【휴식시간과 여가활동】</b></p> <p>① 학교의 장,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(식사시간 포함)을 보장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,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-left: 20px;"> <p>○ 비례의 원칙: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, 방법의 적절성, 법익의 균형성,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</p> </div> <p>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.         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, 음악실, 체육실,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, 이용규칙을 지킨다.        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.        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.</p>	<p>○ 학생의 휴식시간 보장으로 인하여 교육활동, 생활지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‘비례의 원칙’을 적용하여 상황에 따라 지도할 수 있도록 추가함.</p>
<p><b>제26조 【시설이용과 환경】</b></p> <p>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.          ②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.          ③ 수돗물,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.         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,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.</p>	<p><b>제10조 【시설이용과 환경】</b></p> <p>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.          ②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.          ③ 학생은 수돗물,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.          ④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,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.</p>	

	<p><b>제27조 【개인 소유물】</b></p> <p>①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.</p> <p>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.</p> <p>③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쳤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절차에 맞게 교육적으로 지도한다.</p>	
<p><b>제28조 【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】</b></p> <p>①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. 다만,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성냥, 라이터, 폭죽, 미용 기구(드라이기, 고데기)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</li> <li>2. 칼, 쇠파이프, 공구류, 고무총,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</li> <li>3.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</li> <li>4.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</li> <li>5.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</li> <li>6.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</li> <li>7. 담배, 주류, 부탄가스, 본드, 마약, 향정신성 약물</li> <li>8. 차량이나 오토바이</li> <li>9. 기타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·약물·물건 등</li> </ol> <p>② 제1항 7호의 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의 지도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.(별첨 2)</p>	<p><b>제12조 【소지·사용 금지 물품】</b></p> <p>①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</li> <li>2.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</li> <li>3.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·사용을 금지한 물품 가. 소지 금지 물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성냥, 라이터, 폭죽, 미용 기구(드라이기, 고데기)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</li> <li>2) 칼, 쇠파이프, 공구류, 고무총,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</li> <li>3)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</li> <li>4)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</li> <li>5) 인권침해, 혐오 표현,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</li> <li>6)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</li> </ul> </li> </ol>	<p>。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(정의)제2호 매체물,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, 제4호 청소년유해약물</p>

	<p>7) 담배, 주류, 부탄가스, 본드, 마약, 향정신성 약물</p> <p>8. (삭제)</p> <p>8) 그 밖에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매체물, 청소년 유해매체물·청소년유해약물등</p> <p>나.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</p> <p>1)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(이하 “전자기기”라 한다)</p> <p>2)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</p> <p>② 제1항 7호의 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의 지도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.(별첨 1)</p>	
<p>제29조 【소지품검사】</p> <p>①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,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.</p> <p>②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제28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,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</p> <p>2. 제28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,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</p> <p>③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, 해당 학생 성별과 같은 성별의 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.</p> <p>④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,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.</p>	<p>제13조 【소지 물품 검사】</p> <p>① 교원은 학생이 제12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(전 학년·특정 학년·특정 집단 등) 대상으로 정기적·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.</p> <p>② 교원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. 다만,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.(예: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,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소지품검사를 할 수 있으며,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제12조제9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 물품을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습니다.(비례의 원칙이란 목적의 정당성, 방법의 적절성, 법익의 균형성,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)</li> <li>◦ ‘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’는 ‘합리적 의심’으로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</li> </ul>

		사실에 기반한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물품 타인의 생명·신체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바드시 비례의 원칙을(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, 방법의 적절성, 법익의 균형성,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)지켜질 수 있도록 함
제30조 【학생 개인물품 관리】  ① 제28조 및 제29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,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.  ②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.	제14조 【학생 개인물품 관리】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. 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. 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.  ④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제12조 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첨4와 같다.	물품 보관 조치에 관한 항목 신설
제31조 【전자기기 사용】  ③ 교사는 조·종례 시간,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에 교사의 허락을 맡지 않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 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7일 이	제15조 【전자기기 사용】  ③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·관리할 수 있다. 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학생으로부터	물품 보관 조치에 관한 항목 신설

<p>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 할 수 있으며, 2회 이상 적발시에는 14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.</p>	<p>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방법 및 기한은 별첨4와 같다.</p>	
<p><b>제32조 【정보통신 윤리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.</li> <li>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, 성희롱,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</li> <li>③ 음란,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.</li> <li>④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,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.</li> </ul>	<p><b>제16조 【정보통신 윤리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·보호하고,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.</li> <li>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, 성희롱,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</li> <li>③ 학생은 음란,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.</li> <li>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,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.</li> <li>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.</li> </ul>	
<p><b>제33조 【체벌금지】</b>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,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구를 이용한 체벌</li> <li>2.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</li> <li>3. 반복적,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</li> <li>4.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</li> <li>5.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</li> </ol>	<p>(삭제)</p>	<p>◦ 제 16조(생활지도의 방식) 내용에 포함</p>
<p><b>제34조 【교사의 권한】</b>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적 상담과 조언</li> <li>2. 교육환경 조성</li> <li>3. 행동개선 요구</li> <li>4. 훈계·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</li> <li>5.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</li> <li>6.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</li> </ol>	<p><b>제17조 【생활지도의 범위】</b></p> <p>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·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·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·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</p>	<p>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시행령, 「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제15조(생활지도의 범위)와 제16조(생활지도의 방식)신설.</p>
<p><b>제35조 【훈계·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.</li> </ul>	<p><b>제18조 【생활지도의 방식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·제10조에 따른</li> </ul>	

<p>②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</li> <li>2.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</li> <li>3.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</li> <li>4. 망가진 시설, 물품,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</li> <li>5. 학부모 통보와 상담</li> <li>6.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</li> </ol> <p>③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상담·제11조에 따른 주의·제12조에 따른 훈육·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</p> <p>②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에 따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첨 3과 같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행동 변화가 없는 경우 제23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	
<p><b>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</b></p> <p><b>제37조【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】</b></p> <p>①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를 둔다.</p> <p>②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생활안전부장, 학생상담 업무담당자, 교무기획 업무담당자, 각 학년 업무담당자, 학부모위원 1인을 위원으로 하되, 생활교육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.</p> <p>③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,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p>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</li> <li>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</li> <li>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</p>	<p><b>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</b></p> <p><b>제19조【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】</b></p> <p>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(학생의 징계)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및 이 규정 제23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<b>제20조【위원회의 구성】</b></p> <p>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성인권부장, 학생상담 업무담당자, 교무부장, 각 학년 부장, 학부모위원 1인을 위원으로 하되, 생활교육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. 이 외에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신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</p>	<p>제41조(징계통보와 진술권보장)에 대해서는 제23조(학생 징계)에 설명하여 삭제.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인 학칙으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와 제20조의2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음.</p>

<p>회의개최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,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⑦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<b>제38조 【징계 원칙】</b></p> <p>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한다.</p> <p>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.</p> <p>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.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징계 행위의 심각성·지속성·고의성</li> <li>2.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</li> <li>3.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</li> <li>4.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, 장애 여부,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</li> <li>5.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</li> </ul> <p>⑤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</li> <li>2.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줌</li> <li>3.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함</li> </ul> <p>⑥ 제39조제5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</p>	<p>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<b>제21조 【위원회의 운영】</b></p> <p>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</li> <li>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</li> <li>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,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.</p> <p>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<b>제22조 【학생생활교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】</b></p> <p>① 위원회는 경미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인성인권부 및 각 학년별로 학생생활교육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인원은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.</p> <p>② 소위원회는 교원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소위원회의 의결은 별첨2에 따른 징계기준을 따르며, 사안이 경미하여 조치되어지는 징계가 교내봉사 이하인 사안에 대</p>
---	---

<p>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의3에 따른 시·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제39조 【징계의 종류와 기간】 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학교 내 봉사: 5일 이내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</li> <li>② 사회봉사: 10일 이내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</li> <li>③ 특별교육이수: 교육 목적상 필요한 기간 만큼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</li> <li>④ 출석정지: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,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.</li> <li>⑤ 퇴학처분: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.</li> </u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칙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</li> <li>2. 결석이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한 학생</li> <li>3.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</li> </ol> <p>⑥ 훈계·훈육, 교실에서 분리조치, 상담교육,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.</p> <p><b>제40조 【징계 방법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“학교 내 봉사”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(수업 전후, 점심시간 등) 실시한다.</li> <li>② “사회봉사”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.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,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.</li> <li>③ “특별교육이수”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</li> </ul>	<p>해 의결한다.</p> <p>⑤ 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<b>제23조 【학생징계】</b></p> <p>① 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교내의 봉사: 5일(하루 최대 8시간) 이내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</li> <li>2. 사회봉사: 10일(하루 최대 8시간) 이내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</li> <li>3. 특별교육이수: 5일 이상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 단,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.</li> <li>4. 출석정지: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.</li> <li>5. 퇴학처분: 학칙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, 결석이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한 학생, 기타 학칙을 위반하여 생활교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퇴학처분을 행할 수 있다.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징계 행위의 심각성·지속성·고의성</li> <li>2.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</li> <li>3.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</li> <li>4.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, 장애 여부,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</li> </ol>
---	---

<p>에 위탁하여 교육한다.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.</p> <p>④ “출석정지”는 출석정지 처분기간(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)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,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.</p> <p>⑤ 퇴학처분: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.</li> <li>2.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,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해야 하며,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 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.</li> <li>3.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.</li> </ol> <p>⑥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,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<b>제41조 【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】</b>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학교 내 봉사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교환경 정리활동</li> <li>2. 교내도서관 도서, 교재, 교구 정비</li> <li>3. 인성·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</li> </ol> </li> <li>② 사회봉사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: 환경미화, 교통안내, 거리질서 유지 등</li> <li>2.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: 우편물 분류, 도서관 업무 보조 등</li> <li>3.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: 노인정, 장애시설, 사회복지관 등</li> </ol> </li> </ul>	<p>5.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   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</li> <li>2.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li> <li>3.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.</li> <li>4. 제21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li> </ol> <p>④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가 통보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</li> <li>2.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</li> </ol> <p>⑤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의3에 따른 시·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<b>제24조 【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】</b></p> <p>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</li> <li>2.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</li> </ol> <p>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</p>
--	---

<p>③ 특별교육이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 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</li> <li>2.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, 약물, 마약, 환각제,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</li> <li>3. 행동·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,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</li> <li>4.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</li> <li>5. 상담 자원봉사자, 한국청소년상담원,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</li> </ol> <p>④ 출석정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, 운영하고,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·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</li> <li>2.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(실사 확인)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.</li> </ol>	<p>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</p>	
---	---	--

<p><b>제43조 【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】</b></p> <p>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.</p> <p>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,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,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.</p> <p>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</p> <p>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	
<p><b>제44조 【징계 경감과 해제】</b></p> <p>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 또는 전문상담교사 등의 책임 선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처벌 경감 또는 해제 대상 학생은 앞으로 학생생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해제 전에 학생생활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.</p> <p>③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(시험)에 응시하되,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.</p>	<p><b>제5장 규정의 개정</b></p> <p><b>제45조 【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】</b></p> <p>①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“규정개정심의위원회”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둔다.</p>	<p><b>제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</b></p> <p><b>제25조 【학생생활규정의 개정】</b></p> <p>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을 개정할 수 있다.</p>

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회는 위원장, 간사(학생생활안전부장),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.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%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위원회는 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의견수렴, 문현조사를 실시하며, 학교관계자, 학부모 대표,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이 경우 전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학교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</li> <li>2. 관련 법령(법률·대통령령·부령, 자치법규, 행정규칙을 포함한다)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</li> <li>3.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</li> </ol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직원협의회의 의결</li> <li>2. 학부모회의 의결</li> <li>3. 학생자치회의 의결</li> <li>4. 제25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</li> </ol> <p>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,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</p> <p>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듣고,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자치회의 회의</li> <li>2. 학부모회, 학부모회 분과(分課) 모임 등의 회의</li> <li>3. 교직원협의회,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</li> <li>4. 그 밖에 학교누리집, SNS(Social Network Service) 등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</li> </ol>
<p>제46조 【개정안 발의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</li> <li>2. 교사회의 의결</li> <li>3. 학부모회의 의결</li> <li>4. 학생회의 의결</li> <li>5. 관련 법령,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</li> </ol> <p>제47조 【문현조사와 의견수렴】</p> <p>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, 토론회,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문현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.</p>	<p>제26조 【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】</p> <p>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·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생활규정의 제정·개정안의 적법성, 타당성 검토</li> </ol>
<p>제48조 【심의와 결정】</p> <p>① 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</p>	

<p>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</p> <p>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.</p>	<p>2.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, 의견수렴,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</p> <p>3.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·개정을 위한 토론회, 공청회 등 주관</p> <p>4.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</p> <p>5. 학생,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·홍보</p> <p>6.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</p> <p>7.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</p> <p>8.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명 이하의 인원으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성인권부장을 간사로 둔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, 학생의 보호자, 학생대표로 구성하며,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5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1.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</p> <p>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</p> <p>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.</p> <p>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
--	---

	<p>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
<p>부 칙</p> <p>제1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[별첨1] 수업방해학생 지도 기준</p>	<p>부 칙</p> <p>제1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(삭제)</p>	
<p>[별첨2] 흡연학생 지도 기준</p> <p>흡연학생 지도기준</p> <p>1. 흡연학생 지도</p> <p>    가. 1차 적발학생</p> <p>        1) 학년부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① 학년생활지도담당교사 사유서 작성 지도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② 담임교사 학부모 통보 및 내교상담</p> <p>        2) 학생생활안전부 : 흡연 학생 대장 등록 및 학교 내 봉사 2회</p> <p>    나. 2차 적발학생</p> <p>        1) 학년부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① 학년생활지도담당교사 사유서 작성 지도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② 담임교사 학부모 통보 및 내교상담</p> <p>        2) 학생생활안전부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처리(교내봉사)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② 학생생활안전부에서 학생 및 학부모 상담과 교내봉사 과정 설명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③ 학교 내 봉사 및 금연교육 참가 지도(전주시보건소)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④ 학교 내 봉사 3회</p> <p>    다. 3차 적발학생(학생생활안전부)</p> <p>        1)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처리</p> <p>        2) 사회봉사 및 금연교육 참가 : 학생생활안전부 지정 사회봉사기관 및 전주시보건소</p> <p>        3) 사회봉사기간 : 3일 이상</p>	<p>[별첨1] 흡연학생 지도 기준</p> <p>흡연학생 지도기준</p> <p>1. 흡연학생 지도</p> <p>    가. 1차 적발학생</p> <p>        1) 생활지도업무담당자: 학생생활교육 소위원회에서 징계처리, 흡연 학생 대장 등록</p> <p>        2) 담임교사 학부모 통보 및 내교상담</p> <p>        3) 인성인권부: 학교 내 봉사 실시(2회 이상)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- 때에 따라 담임교사 혹은 각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 실시 가능</p> <p>    나. 2차 적발학생</p> <p>        1) 생활지도업무담당자: 학생생활교육 소위원회에서 징계처리, 흡연 학생 대장 등록</p> <p>        2) 담임교사 학부모 통보 및 내교상담</p> <p>        3) 인성인권부: 학교 내 봉사 실시(3회 이상)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- 때에 따라 담임교사 혹은 각 학년 생활지도 담당 실시 가능</p> <p>        4) 보건실: 금연교육 참가 지도</p> <p>    다. 3차 적발학생</p> <p>        1)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처리</p> <p>        2) 사회봉사 및 금연교육 참가</p> <p>        3) 사회봉사기간 : 3~5일에 걸쳐 총 24시간 이상</p>	

구분	학교 내 봉사	사회봉사	비고	구분	학교 내 봉사	사회봉사	비고	
봉사방법	학생생활안전부에서 작성한 교내봉사활동 계획에 준해서 봉사 활동실시 (학년은 자체실시)	학생생활안전부에서 지정한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후 확인서 제출	불용시 학교 생활규정에 의해서 가중처벌	봉사방법	인성인권부에서 작성한 교내봉사활동 계획에 준해서 봉사활동 실시	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후 확인서 제출	불용시 학생생활규정에 의해서 가중처벌	
	<p>라. 4차 적발학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처리</li> <li>2) 특별교육 5일</li> </ul> <p>마. 5차 이상 적발학생(학생생활안전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처리</li> <li>2) '출석정지' 5일 처분</li> </ul> <p>바. 흡연 적발 학생은 등·하교 시 교내 및 교문 앞에서 '금연 캠페인' 활동은 2회 이상 실시 해야한다.</p> <p>사. 흡연예방지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휴식시간 정문 및 각종 화장실, 기숙사주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휴식시간 정문 : 배움터자원봉사자</li> <li>② 휴식시간 각종 화장실 및 기숙사 주변 : 학년생활지도 담당교사</li> </ul> </li> <li>2) 점심 및 저녁시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정문 : 배움터자원봉사자</li> <li>② 각종 화장실 : 학년생활지도 담당교사</li> <li>③ 교내순찰 : 학생생활안전부 요일별 담당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층 화장실(동편) 및 기숙사 동편 울타리 : 2학년생활지도 담당교사</li> <li>- 3층 화장실(서편 및 동편) : 3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</li> <li>- 4층 교직원 화장실 및 5층 : 1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</li> <li>- 1층 서편 및 별관 화장실, 별관울타리 : 학생생활안전부 교사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3) 저녁시간(18:00~18:50)</li> </ul>	<p>라. 4차 적발학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처리</li> <li>2) 특별교육 5일</li> </ul> <p>마. 5차 이상 적발학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처리</li> <li>2) '출석정지' 처분: 최소 5일로 하되, 반성의 정도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부여가능</li> </ul> <p>사. 흡연예방지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각 학년의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인성인권부에서 지정한 각종 화장실을 순회지도 함</li> <li>2) 인성인권부 교사는 정문, 정진관, 기숙사 주변, 그 외 취약구역을 순회지도함.</li> </ul> <p>3. 금연교육실시</p> <p>가. 대상 :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 및 금연교육 희망자</p> <p>나. 시기 : 보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협조</p>						

<p>① 정문 : 배움터자원봉사자 및 부장교사 중 희망자          ② 교내순찰 : 학생생활안전부장,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          3. 금연교육실시          가. 대상 :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 및 금연교육 희망자          나. 시기 : 보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협조</p>		
별첨 3 (신설)	[별첨3] 학생 분리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	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(교육부고시 제2023-28호) 6항 및 9항
별첨 4 (신설)	[별첨4] 학생으로부터 분리·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	
별첨 5 (신설)	[별첨5] 생활지도, 징계, 물품보관에 따른 서식(서식1~서식8)	